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78

발의연월일: 2025. 4. 14.

발 의 자: 윤준병・박용갑・정동영

박희승 • 박민규 • 서영교

이성윤ㆍ허 영ㆍ문대림

김동아 · 조계원 · 송옥주

이병진 · 신영대 · 김우영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으로 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없는 상황임.

이에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 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함(안 제101조제1항).
- 나.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6조).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를 "고용노동부와 그소속 기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로 한다.

제106조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행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 제101조(감독 기관) ① ---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 -----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 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 로감독관을 둔다. 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특별자치도에-----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 제106조(권한의 위임) -----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 -----지방고용노동관 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서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이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에게-------.